

# 공공부문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대책 방향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감소방안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I. 문제제기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이행

- 지난 몇 년 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실태(2011.11, 2012.1, 2013.4, 2014.4)를 발표했고, 주된 내용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임.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부문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및 실적을 공표했음. 게다가 정부 지침으로 용역도급 계약 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고용승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침까지 제시한 상황임.
- 사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국가의 ‘노동행정’ (Labour administration) 중 한 정책이기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은 국가의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공공행정 활동으로 볼 수 있음. 때문에 정부(중앙/지방) 및 공공기관(중앙, 지방)과 교육기관 각 조직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것임.<sup>1)</sup>
- 일반적으로 국가의 노동 및 고용정책으로서의 역할은 규범 설정자(rule setting), 사용자(model employer) 그리고 지도감독·모니터링(monitoring)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각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및 사적지위에 근거하고 있어서 민간부문 근로조건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의 정도가 달라짐.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제도적 효과성 미비

-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중앙정부(관계부처 합동) 및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몇 년

1) 국제노동기구(ILO, 1978)는 노동행정을 “public administ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national labour policy.” 로 정의하고 있음.

사이 비정규직 관련 고용대책(직접고용 전환 및 계획, 조례 제정)을 발표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실태자료(고용노동부, 2012~2014)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됨.

✓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제도적 효과성이 미약하다는 것임. 이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정규/무기계약직) 과정에서 ‘전환 예외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 실제 직접고용 전환 규모 자체가 적다는 것임.

✓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 ‘전환 대상’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 주요 비정규직 쟁점인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 이 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이행 실적을 검토했음. 본 자료는 2012년과 2013년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원자료(2013.4, 2014.4)를 재분석한 것임.<sup>2)</sup>

## II.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 □ 공공부문 및 지자체 비정규직 규모

-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0,636명(직접고용 240,993명, 간접고용 99,643명)으로 정규직(1,350,220명) 대비 약 25.2%(직접고용 17.8%, 간접고용 7.3%) 수준이었음. 이중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2011년 57,775명(직접고용 47,516명, 간접고용 10,259명)으로 정규직(327,842명) 대비 약 17.6%(직접고용 14.4%, 간접고용 3.1%) 수준이었음.

-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51,781명(직접고용 239,841명, 간접고용 111,940명)

2) 이 글에서 다룬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중앙-지방)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통합 과정에서 변동이 있거나, 2014년 신설 기관 등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은 제외하였음. 이런 이유로 전체 공공부문(810개) 중 분석 표본은 총 762개(중앙행정기관 41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 자치단체 229개, 중앙 공공기관 280개, 지방공공기관 123개, 교육기관(교육청) 17개, 교육기관(국공립대학교) 55개)로 분석 대상임의 추출했으나 자치단체는 변화 없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은 필자의 기존 원고(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2014.5.12.)를 재구성 한 것임을 밝힘.

으로 정규직(1,408,866명) 대비 약 24.9%(직접고용 17.0%, 간접고용 7.9%) 수준이  
 었음. 이중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2013년 64,615명(직접고용 53,340명, 간접고  
 용 11,275명)으로 정규직(313,037명) 대비 약 20.6%(직접고용 17.0%, 간접고용  
 17.4%) 수준이었음.<sup>3)</sup>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1(2006년-2011년)**

구 분	2006년				2011년			
	합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합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	
<b>합계</b>	1,553,674	1,242,038	246,844 (15.9)	64,792 (4.2)	<b>1,690,856</b>	<b>1,350,220</b>	<b>240,993 (14.3)</b>	<b>99,643 (5.9)</b>
중앙 행정	273,715	243,408	22,813 (8.3)	7,494 (2.7)	292,648	266,262	18,575 (6.3)	7,811 (2.7)
자치 단체	383,771	311,564	67,595 (17.6)	4,612 (1.2)	385,617	327,842	47,516 (12.3)	10,259 (2.7)
공공 (중앙)	368,384	271,655	54,614 (14.8)	42,115 (11.4)	402,338	293,085	46,971	63,378
공공 (지방)							7,924	9,827
교육 기관	527,804	415,411	101,822 (19.3)	10,571 (2.0)	610,253	463,031	125,087 (20.5)	22,153 (3.6)

주 : 2006년,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자료에서는 공공기관(중앙/지방)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정규/비정규 수치가 조금 다  
 를 수 있음. 2011년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2.4%이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4.8%임.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 자료(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재구성

**[표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2012년-2013년)**

구 분	2012년				2013년			
	합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견용역)	합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비정규	
<b>합계</b>	<b>1,754,144</b>	<b>1,393,889</b>	<b>249,614 (14.2)</b>	<b>110,641 (6.3)</b>	<b>1,760,647</b>	<b>1,408,866</b>	<b>239,841 (13.6)</b>	<b>111,940 (6.4)</b>
중앙 행정	289,499	263,529	20,074 (6.9)	5,896 (2.0)	285,171	259,402	19,038 (6.7)	6,731 (2.4)
자치 단체	385,050	324,281	49,349 (12.8)	11,420 (3.0)	377,652	313,037	53,340 (14.1)	11,275 (3.0)
공공 (중앙)	387,019	276,669	49,349 (12.8)	63,379 (16.3)	391,563	279,017	47,793	64,753
공공 (지방)							45,806	46,971 (12.1)
교육 기관	629,019	483,604	125,296 (19.9)	20,119 (3.2)	644,316	511	111,017 (17.2)	21,731 (3.4)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 발표자료(2013년, 2014년) 재구성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2011년 57,775  
 명(직접고용 47,516명, 간접고용 10,259명)에서 2013년 64,615명(직접고용 53,340명,  
 간접고용 11,275명)으로 오히려 규모가 증가(6,840명 증가, 직접고용 5,824명 증가↑, 간접  
 고용 1,016명 감소↓) 했음.

## □ 공공부문 및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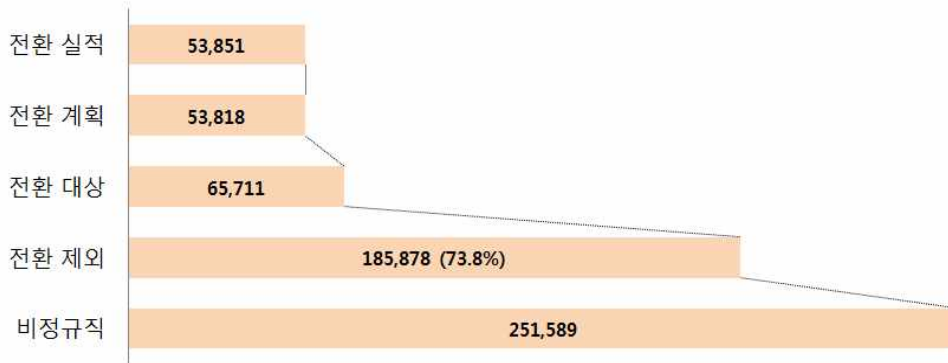
- 지난 2년 사이(2012년부터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53,821명(2012년 22,069명, 2013년 31,752명)으로 전체 비정규직(340,636명, 직접고용 240,993명, 간접고용 99,643명)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251,589명, 일부 지자체 제외) 전환 제외자(185,878명)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전환 대상자(65,711명)의 약 81.9% 수준에 그침.
-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84.2%), 교육기관(72.5%), 중앙 공공기관(71.5%), 지방 공공기관(66.6%), 중앙행정기관(64.6%) 순임. 이 시기 지자체(광역-기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6,038명(2012년 2,361명, 2013년 3,677명)으로 지자체 비정규직(51,099명) 중 전환 제외자(43,064명)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전환 대상자(8,035명)의 약 75.1% 수준에 불과함.

[표3]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및 실태(2012년-2015년)

구분	기관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현황(2012-2013)			전환시기 '12	전환시기 '13	전환시기 '14	전환시기 '15
		비정규직 로자수	전환 제외자*	전환 대상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대상)
<b>합계</b>	<b>810</b>	<b>251,589</b>	<b>185,878</b>	65,711	22,069 (22,914)	31,782 (30,904)	(19,908)	(14,899)
중앙행정 기관	47	20,281	13,115	7,166	2,361 (3,197)	3,677 (2,499)	(3,388)	(1,279)
자치단체	246	51,099	43,064	8,035	1,772 (1,905)	2,756 (2,683)	(2,584)	(2,768)
공공기관 (중앙)	302	46,130	32,989	13,141	3,936 (3,517)	5,726 (5,485)	(4,942)	(2,714)
공공기관 (지방)	138	8,507	5,667	2,840	1,599 (1,581)	1,166 (929)	(950)	(961)
교육기관	77	125,572	91,043	34,529	12,820 (12,295)	18,457 (19,308)	(8,044)	(7,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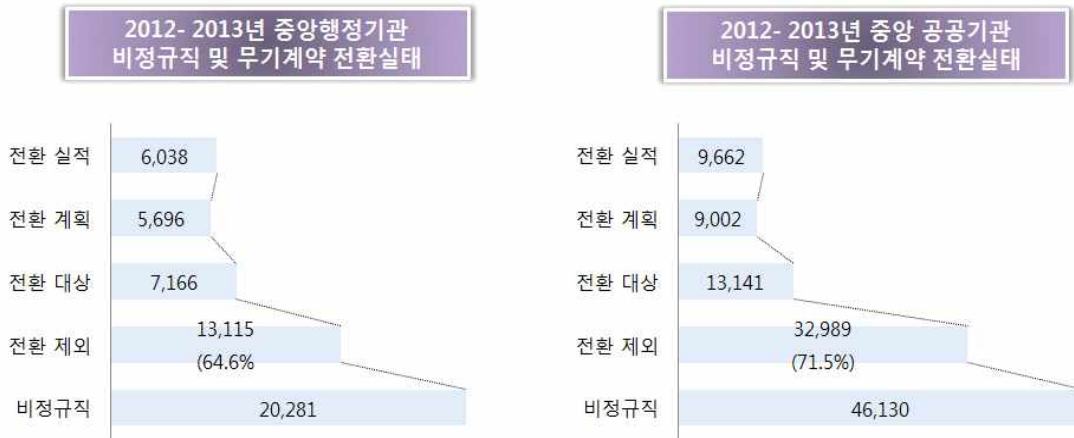
주 : \*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및 사업원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정부의 실적 비율은 각 연도별 전환계획 대비 실적을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 각 연도별 전환 계획 및 실태 발표자료 재구성

[그림1]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무기계약 전환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 주 : 비정규직 전환 대상 전체 규모는 정부 발표 인원 기준이므로, 간접고용은 제외된 비정규직 인원임.

[그림2]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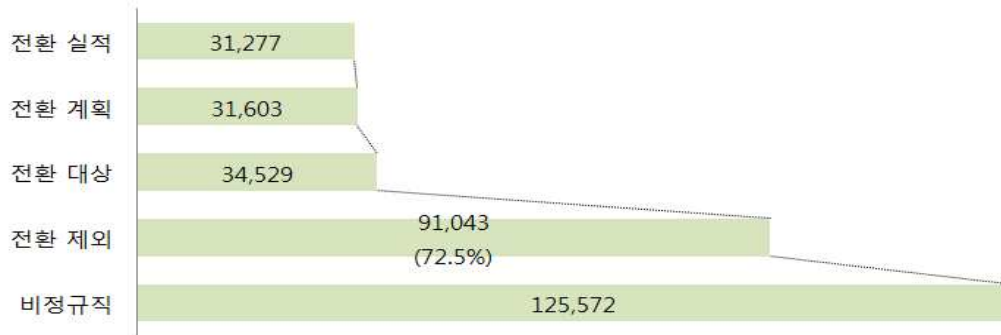
\* 주 : ‘공공기관’ 은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기업(302개)을 의미함.

[그림3]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 주 : ‘공공기관’ 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138개)을 의미함.

[그림4] 교육기관(교육청/대학) 무기계약 전환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표4]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공공부문 하위영역	무기계약 전환 실적(2012년)			무기계약 전환 실적(2013년)		
	전환계획	전환실적	전환실적비율	전환계획	전환실적	전환실적비율
<b>합계</b>	22,571	21,696	98.6%	16,204	16,896	121.0%
중앙행정기관	3,191	2,355	89.2%	1,207	1,576	112.2%
지방자치단체(광역)	566	528	79.0%	402	395	99.4%
지방자치단체(기초)	1,339	1,244	92.6%	2,281	2,361	147.2%
공공기관(중앙)	3,599	3,150	109.4%	4,322	4,575	107.8%
공공기관(지방)	1,581	1,599	91.6%	923	1,158	116.7%
교육기관(교육청)	12,010	12,568	101.6%	6,818	6,618	101.2%
교육기관(국공립대학)	285	252	103.8%	251	213	95.5%

#### □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태

- 먼저, 지난 2년 사이(2012년 ~ 2013년) **광역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평균 인원**은 54명이며, 서울지역을 제외할 경우 평균(27명) 이하의 무기계약 전환 지자체는 부산(5명), 대전(7명), 울산(15명), 충남(25명), 전남(20명), 경북(9명), 경남(15명) **7곳**임. 광역 지자체 중 자체 전환 실적 비율에서도 충북(84%)과 경남(67%)은 가장 낮은 전환 비율임.
- 다음으로, 지난 2년 사이(2012년 ~ 2013년) **기초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평균 인원**은 255명으로, 평균 이하의 무기계약 전환 지자체는 서울(71명), 부산(34명), 대구(63명), 인천(79명), 대전(93명), 울산(68명), 충북(99명), 전북(212명), 경북(84명), 경남(183명), 제주(89명) **11곳**임. 기초 지자체 중 자체 전환 실적 비율에서도 서울(75%)은 가장 낮은 전환 비율임.

[그림5]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2012년-2013년, 단위: 명)



\* 주 : 1) 자치단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은 해당 지자체 투출기관(지방공기업) 및 대학(시립대학교)은 제외된 현황임.  
 2) 광역 지자체 중 서울 지역 무기계약 전환 실적은 은평(23명), 성동(26명)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전환하지 않았음. 서울기초 지자체 중 강동,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중구, 서초, 성북, 영등포, 종로, 중랑구는 지난 2년 사이 전환자가 없었음.  
 3) 광역 지자체 중 경기 지역 무기계약 전환실적은 수원(207명), 과천(84명), 안양(56명), 의정부(45명), 이천(43명), 의왕(31명), 안산(29명), 김포(29명), 하남(29명), 양평(18명), 연천(16명), 가평(12명)을 제외하고 모두 10명 이하 전환했음. 특히 용인과 오산, 화성은 지난 2년 사이 전환자가 없었음.

### Ⅲ. 토론 및 논의 : 정책방향

####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향

-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미약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가 약 73.8%(185,878명) 정도 되기 때문임. 전환 제외 대상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84.2%, 43,064명), △교육기관(72.5%, 125,572명), △중앙 공공기관(71.5%, 32,989명), △지방 공공기관(66.6%, 8,507명), △중앙행정기관(64.6%, 13,115명) 순임.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개선 과정에서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취지와 상반되게, 무기계약 전환 인원은 지난 2년 동안 53,821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15% 수준 불과했음.

- 실제로 지난 2년 사이 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6,038명으로 자치단체 전체 비정규직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음. 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전환 의지가 미약한 곳(부산, 대전, 경북, 경남, 울산 등)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상시 지속 업무로 판단 가능한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8,397명)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780명)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조직/지역/직무별 노동조건 격차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의 노력이 필요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 방안의 구조적 요인 이외에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래의 내용을 검토 해볼 수 있음.<sup>4)</sup>
- ✓ **첫째**,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함. 지난 몇 년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15% 남짓에 불과함. 이것은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일선 현장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공공부문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전환 제외 대상(기간제 18가지 예외 조항과 시행령 보수적 적용)으로 약 73.8%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 이는 공공부문 해당 조직(부서)에서 자의적 판단과 기준(전환 절차, 채용, 평가 및 보상 등)으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광역 및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상시 지속 업무와 성격(기준 완화), 전환 여부, 그리고 채용 점검(모니터링) 과정을 노사정 차원에서 개입하고 모니터링(after management) 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직접고용 전환의 좋은 사례(best practice)는 서울시와 인천시임.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그 주요 대상 기준에서 ‘기간제법 예외조항’ 중 연령(55세)기준이나 ‘기간(11개월)’ 기준을 보편적 노동인권의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했기에 가능했음. 아래 [표9]의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상시 지속 원칙’ 기준은 직접고용 전환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

4) 물론 구조적인 요인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의 법제도적 개선(총액인건비, 경영평가, 조직(정원) 및 예산지침, 비정규직법, 조례, 재정지원사업인 국비보조/매칭사업, 내부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함.



주고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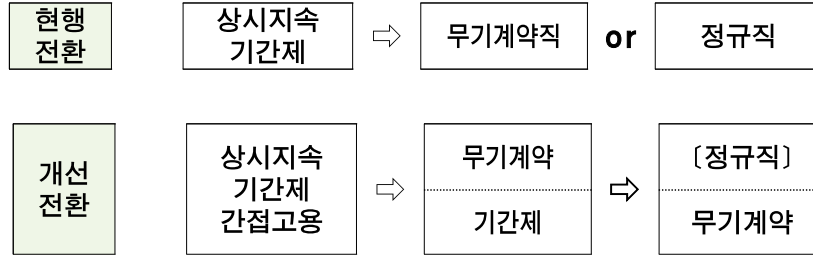
[표6] 서울시 및 중앙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과 원칙

구 분		서울시	정부 지침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에 대한 기준		연간 9개월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전환제외		- 만 55세~59세 까지의 기간제근로자 : 무기계약직 전환 * 만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현행유지	5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로 현행유지
전환방식		-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 근무성적·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평가(네거티브 방식) * 소명기회 부여, 장기근속자 우대방안 등 마련	대상자에 대해 실적·직무능력·태도 등에 대해 개인별 평가
전환시기		2012. 5. 1 일괄 전환	근로계약 종료시점에서 개인별 전환 *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 조기전환 가능
전환대상자 고용개선		'고용안정'+ '고용의 질' 개선 - 전환대상자 '호봉제' 신규 도입 : 본청·사업소·호봉제(1~33호봉)를 도입, 장기근속자 우대·임금체계를 개선, '근속가산금' 기본급 산입 - 전환대상자에 대해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무기계약직과 동일)	고용안정
전 환 제 외 자 처 우 개 선	대상	6개월 미만 근무자를 포함한 전환제외자 전원 동등한 처우 개선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와 '6개월~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차등 처우개선
	내용	복지포인트 1,360천원, 명절휴가비 1,100천원 총 2,460천원 일괄 월별 균분(월20만원) 지급 * 투자·출연기관 월 11만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 기본 복지포인트 30만원 및 상여금 연 평균 80~100만원 지급 * '6개월~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시간제'는 '근무기간, 시간, 직종 등 고려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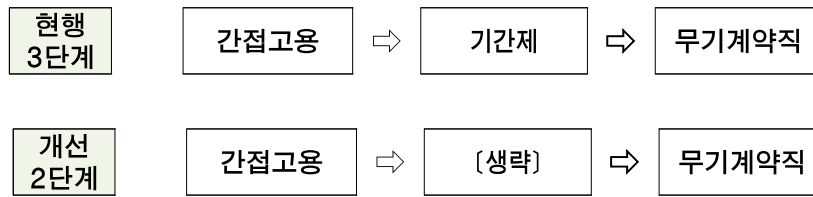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김유선, 김종진 외, 2011)

- ✓ **둘째**,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의 주요 한계점은 간접고용 문제임.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주요 쟁점인 간접고용 중 사내하도급 성격의 용역근로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함. 현재 중앙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주요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에 국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상시 지속' 업무 성격은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이 높은 직무가 다수임. 때문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문제를 중앙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 효과는 없음. (\*3단계 : 간접고용 → 기간제 → 무기계약직 ⇄ 2단계 : 간접고용 → 무기계약직)

**[공공부문 고용구조 전환과정안]**



**[공공부문 간접고용 전환개선안]**



-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규모 파악인데 현장에서 적용 제외 및 누락된 조사통계 자료가 제출되고 있음.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조직과 부서의 자의적 판단(민간위탁과 용역근로 차이)으로 간접고용(용역근로) 노동자가 민간위탁으로 처리되어 통계에 누락되고 있음. 이는 현재 공공부문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전통적 민간위탁이나 시설위탁(건물, 복지시설 등)이 아니라, 노무도급 성격의 사무위탁]
- 셋째, 공공부문 각 기관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총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치단체 비정규직 대책이 현재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모두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비정규직 정책과제 수립이 시급함.[\* 지난 2년 사이 자치단체의 상시 지속 업무 성격이 강한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
- 이것은 그간 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중앙 및 광역 자치단체에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사이에, 기초 지자체 고용관계의 사각지대(상시 지속 판단, 이행 기준과 점검, 채용 등)로 방치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우선 영역으로 자치단체(서울 제외 15개 광역, 기초 지자체)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향후 무기계약 전환의 실효성 있는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대책 세무 검토안 예시]

- ① 상시 지속 업무의 판단의 보수적 판단 기준(기간제법)의 개선 대책 모색
  - ☞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 재검토(정부 및 전문가 TF 운영)
  
- ② 직접고용 이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대책 방향 모색
  - ☞ 정원 및 총액인건비/총인건비 예외 규정 반영 지침
  
- ③ 지자체 사내하도급 성격 민간위탁의 간접고용(용역파견) 통계 분류 정책 지침
  - ☞ 콜센터, 상수도 검침 등 용역파견 업무의 민간위탁 → 간접고용 재분류
  
- ④ 기관/단체 경영 평가 '좋은 일자리 지표' 의무 도입 반영
  - ☞ 무기계약직 전환/이행 비율, 신규채용 기관평가 정원TO, 교부금 반영(매칭)
  
- ⑤ 민간위탁/조달업체 비정규직 비율 연동 공공조달정책 원용
  - ☞ 수탁기관의 신규 채용 및 무기계약 전환/이행 기관 '가점/우대조항' 확대
  
- ⑥ 외주화 및 내부화 업무의 고용안정화 방향 모색
  - ☞ 인소싱으로 인한 직접고용 업무 재아웃소싱 금지 규정 '지침, 조례' 등.<sup>5)</sup>

---

5) 한편 공공부문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현재 주요 지자체 비정규직의 직무(사무보조, 공원녹지, 도로보수, 시설관리, 환경미화)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고용형태별(기간제, 시간제, 용역, 파견) 지역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공공부문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차별개선 조치(상향 평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한편 최근 지자체에도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조치가 시간제 일자리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방안(1986년 네덜란드의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 차별금지 관련 평등대우법)이 모색되어야 함.

[부록]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실태 및 규모

□ 지자체 및 교육기관 무기계약 전환 실태

<부표1>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2012년-2013년, 단위: 명)

2011년 자치단체 총원 및 비정규		광역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태							기초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태						
		광역	2012년 전환			2013년 전환			기초	2012년 전환			2013년 전환		
총원	비정규 (기간제)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385,617	57,755 (39,802)	합계	566	528	79.0	402	395	99.3	합계	1,339	1,244	92.6	2,281	2,361	147.2
60,909	7,763 (4,753)	서울	332	325	98.0	159	159	100.0	서울 기초	170	39	55.7	47	32	75.0
23,423	4,261 (2,526)	부산	1	1	100.0	4	4	100.0	부산 기초	21	9	55.0	35	25	103.1
23,423	1,976 (1,417)	대구	3	0	0.0	11	11	100.0	대구 기초	15	24	450.0	44	39	96.3
14,851	4,137 (1,814)	인천	0	0	0.0	50	53	106.0	인천 기초	26	28	66.7	27	51	183.4
19,444	558 (453)	광주	53	53	100.0	1	1	100.0	광주 기초	34	83	283.8	185	190	103.4
9,662	1,509 (1,003)	대전	0	0	0.0	0	7	?	대전 기초	0	5		74	88	113.5
7,286	1,279 (1,223)	울산	5	5	100.0	19	10	53.0	울산 기초	0	16		48	52	108.3
-	-	세종	30	31	103.0	17	17	100.0							
61,110	10,413 (6,677)	경기	0	0	0.0	30	30	100.0	경기 기초	286	304	60.3	354	434	133.0
22,721	3,917 (2,933)	강원	30	30	100.0	5	5	100.0	강원 기초	270	238	80.1	397	429	105.1
16,122	1,959 (1,616)	충북	0	0	0.0	37	31	84.0	충북 기초	10	11	110.0	64	88	137.5
21,433	3,009 (2,420)	충남	35	16	46.0	5	9	180.0	충남 기초	82	83	99.4	297	201	95.3
21,511	2,865 (2,243)	전북	20	20	100.0	14	14	100.0	전북 기초	94	84	107.3	130	128	102.7
27,013	3,208 (2,592)	전남	4	3	75.0	17	17	100.0	전남 기초	147	152	109.7	413	416	100.7
32,524	5,111 (3,924)	경북	0	0	0.0	9	9	100.0	경북 기초	29	33	95.1	46	51	120.0
30,015	4,500 (3,572)	경남	14	3	21.0	18	12	67.0	경남 기초	101	64	54.5	103	119	126.0
8,982	1,310 (636)	제주	39	41	105.0	6	6	100.0	제주 기초	54	71	128.0	17	18	108.5

\* 주 : 1) 자치단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은 해당 지자체 투출기관(지방공기업) 및 대학(시립대)은 제외된 현황임.  
2) 광역자치단체 굵은 글씨(서울,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 지역임

<부표2> 교육기관(학교-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실적 규모(2012년-2013년, 단위: 명)

교육청 (학교)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및 실적(2012)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및 실적(2013)		
	전환계획	전환실적	전환비율	전환계획	전환실적	전환비율
<b>합계</b>	12,010	12,568	101.6%	17,916	17,104	101.3%
<b>서울교육청</b>	2,405	2,204	92.0%	1,679	1,726	103.0%
부산교육청	383	391	102.0%	762	751	99.0%
대구교육청	357	379	106.0%	670	654	98.0%
인천교육청	864	884	102.0%	689	574	83.0%
광주교육청	282	295	105.0%	538	538	100.0%
대전교육청	249	280	112.0%	364	392	108.0%
울산교육청	251	252	100.0%	448	444	99.0%
세종교육청	49	36	73.0%	11	16	145.0%
경기교육청	2,947	2,880	98.0%	9,419	8,760	93.0%
강원교육청	1,348	2,149	159.0%	569	569	100.0%
충북교육청	556	505	91.0%	526	524	100.0%
충남교육청	564	528	94.0%	535	432	81.0%
전북교육청	282	284	101.0%	349	419	120.0%
전남교육청	404	467	116.0%	493	484	98.0%
경북교육청	461	434	94.0%	762	719	94.0%
경남교육청	574	572	100.0%	-	-	-
제주교육청	34	28	82.0%	102	102	100.0%

\* 주 : 교육기관(학교) 현황자료에서 2013년 경남은 실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계획 및 실적 없는 것으로 판단)

□ 공공부문 하위 유형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부표3>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2013, 단위: 명)

공공부문 하위영역	직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직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계	시간제	기간제	기타	계	시간제	기간제	기타
합계	247,651	48,608	195,174	3,869	122,651	24,338	95,760	2,553
중앙행정기관	20,053	1,825	17,419	809	6,500	581	7,012	161
지방자치단체(광역)	7,027	534	6,129	364	6,918	351	6,449	118
지방자치단체(기초)	42,322	3,461	37,944	917	46,422	4,241	41,341	840
공공기관(중앙)	45,165	11,555	32,564	1,046	33,193	4,352	29,906	891
공공기관(지방)	7,829	1,553	6,072	204	8,273	1,744	6,386	143
교육기관(교육청)	113,567	22,843	90,333	391	624	6,262	1,285	294
교육기관(국공립대학)	11,688	6,837	4,713	138	9,829	6,807	3,381	106

<부표4>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공공부문 하위영역	간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계	파견	용역	계	파견	용역
합계	109,163	8,446	100,717	81,563	8,476	73,087
중앙행정기관	5,892	26	5,866	4,323	8	4,315
지방자치단체(광역)	2,750	41	2,709	2,710	2	2,708
지방자치단체(기초)	8,670	102	8,568	8,565	43	8,522
공공기관(중앙)	62,424	7,700	54,724	52,519	7,953	44,566
공공기관(지방)	9,326	405	8,921	4,221	300	3,921
교육기관(교육청)	16,781	120	16,661	5,684	72	5,612
교육기관(국립대학)	3,320	52	3,268	3,541	98	3,443

<부표5> 광역 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광역 단체	비정 규 총원	직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비정 규 총원	직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계	시간 제	기간 제	기타	계	파견	용역		계	시간 제	기간 제	기타	계	파견	용역
합계	9,777	7,027	534	6,129	364	2,750	41	2,709	9,628	6,918	351	6,449	118	2,710	2	2,708
서울	2,634	1,577	127	1,448	2	1,057	16	1,041	2,511	1,554	10	1,544	0	957	0	957
부산	775	487	74	413	0	288	1	287	1,088	705	26	679	0	383	0	383
대구	537	350	0	290	60	187	0	187	507	360	17	339	4	147	0	147
인천	687	356	22	325	9	331	21	310	654	410	116	288	6	244	0	244
광주	130	66	14	52	0	64	0	64	183	43	16	27	0	140	0	140
대전	273	160	46	114	0	113	0	113	232	119	45	74	0	113	0	113
울산	286	235	36	176	23	51	0	51	218	147	2	145	0	71	0	71
세종	94	94	1	93	0	0	0	0	130	130	23	107	0	0	0	0
경기	699	502	16	486	0	197	0	197	673	517	15	486	16	156	0	156
강원	542	505	0	399	106	37	0	37	427	414	2	412	0	13	0	13
충북	417	322	6	280	36	95	0	95	374	315	0	291	24	59	0	59
충남	364	350	0	350	0	14	0	14	596	439	3	436	0	157	0	157
전북	433	381	19	362	0	52	0	52	320	268	13	255	0	52	0	52
전남	382	323	20	303	0	59	0	59	399	332	6	326	0	67	0	67
경북	524	446	1	414	31	78	2	76	513	435	1	403	31	78	2	76
경남	615	505	73	370	62	110	1	109	566	497	6	468	23	69	0	69
제주	385	368	79	254	35	17	0	17	237	233	50	169	14	4	0	4

<부표6> 기초 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비정 규직 총인 원	직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비정 규직 총인 원	직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계	시간 제	기간 제	기타	계	파견	용역		계	시간 제	기간 제	기타	계	파견	용역
합계	50,992	42,322	3,461	37,944	917	8,670	102	8,568	54,987	46,422	4,241	41,341	840	8,565	43	8,522
서울 기초	6,143	4,737	203	4,417	117	1,406	24	1,382	6,460	4,862	343	4,509	0	1,608	30	1,578
부산 기초	3,707	2,617	119	2,479	19	1,090	2	1,088	3,509	2,841	105	2,717	19	668	1	667
대구 기초	1,889	1,443	16	1,423	4	446	4	442	1,906	1,413	110	1,303	0	493	0	493
인천 기초	2,548	1,865	259	1,606	0	683	3	680	2,562	2,221	241	1,932	48	331	1	330
광주 기초	660	369	4	366	9	291	0	291	519	366	40	318	8	153	0	153
대전 기초	805	744	57	635	52	61	1	60	904	833	26	752	55	71	1	70
울산 기초	1,371	1,267	94	1,147	26	104	1	103	1,369	1,317	91	1,201	25	42	1	41

경기초	10,076	7,554	925	6,589	40	2,522	51	2,471	11,110	8,410	1,342	6,915	153	2,700	7	2,683
강원초	3,448	3,021	71	2,888	62	427	0	427	3,420	2,880	305	2,558	17	540	0	540
충북초	2,449	2,157	253	1,857	47	292	0	292	2,469	2,135	327	1,799	9	334	0	334
충남초	2,843	2,365	207	2,019	139	478	12	466	2,985	2,649	184	2,445	20	336	0	336
전북초	2,350	2,302	252	1,921	129	48	0	48	2,680	2,144	171	1,935	38	546	0	546
전남초	3,034	2,888	82	2,748	68	136	2	134	3,704	3,453	180	3,080	183	251	0	251
경북초	4,016	3,764	409	3,245	110	252	0	252	5,512	5,219	309	4,787	123	293	2	291
경남초	5,103	4,669	434	4,141	94	434	2	432	5,080	4,884	268	4,526	90	196	0	196
제주초	1,550	550	76	473	1	0	0	0	808	805	199	554	52	3	0	3